



휴일무일

2015.10.5 |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tempjunga@gmail.com

노동은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참고 견뎌야만 하는 고역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노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주목하였던 프로테스탄트들의 노동에 대한 소명(召命) 의식도 결국엔 천국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종 노동자들이 노동으로 인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직접적인 산업재해와 과로사로, 또는 노동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죽음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노동자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음을 당했다는 믿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문득 한국 사회가 그리스 신화 속 제 자식을 잡아먹는 신 크로노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식에게 지배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신탁에서 벗어나 고자 자식을 삼키는, 스페인 화가 고야(Francisco de Goya)가 그린 크로노스의 광기어린 얼굴이 지금 한국 사회의 얼굴처럼 느껴진다. 낳고 키운 자식이 제 아비에게 잡아먹히는 참혹한 광경을 반복해서 지켜본 현재의 레아들이 크로노스의 자식 낳기를 포기한 다고 한들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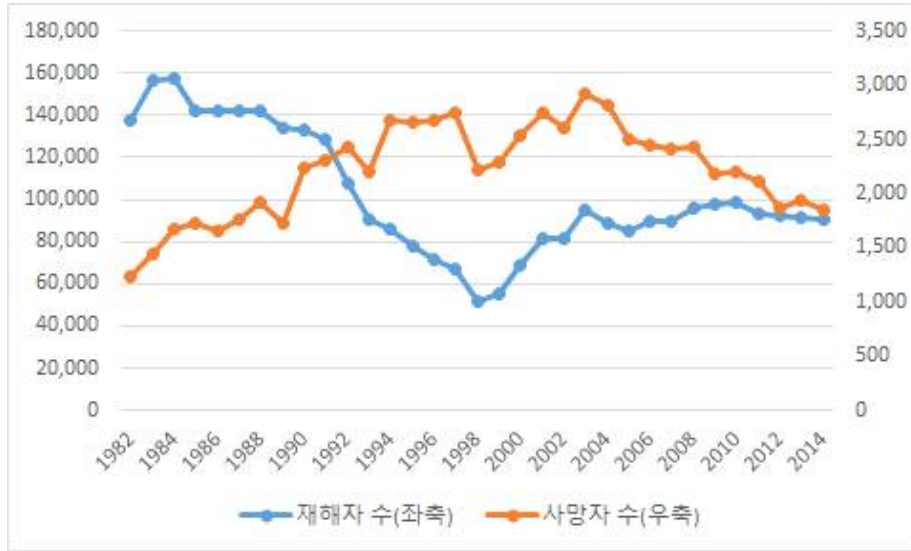
자식의 삶을 통째로 삼키는 이 사회의 거대한 서사는 사실 이미 자식들의 삶에 속속들이 침투한 미시적 패륜들의 결정적 재현이다. 즉, 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 죽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강탈의 가장 심각한 징후인 것이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은 다루기가 쉬워진다.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강탈이 지배적이라는 점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자 수는 90,909명, 사망자수는 1,850명이었다. 산업재해로 하루에 다섯 명이 사망하고 약250명은 죽거나 다친 셈이다. 이 자료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경우만을 공표한 것이며 포괄하지 않는 사실상의 산재 노동자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을 하다가 죽고 다치는 일은 일상적 위협에 가깝다.

1) 베버, 막스(2006)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그림 1. 연도별 산업재해자 및 재해사망자 수(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연도(국가통계포털kosis.kr 참조)

그림 1은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자 수가 1982년 약 346만 명에서 2014년 1,700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므로, 재해율은 외환위기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 약간 증가하고 2003년부터 다시 조금씩 감소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재해자 수도 늘어난 것이 당연지사 아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감소세가 그 반증이다. 게다가 사망자 수는 2003년까지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감소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재해 원인은 업무상 질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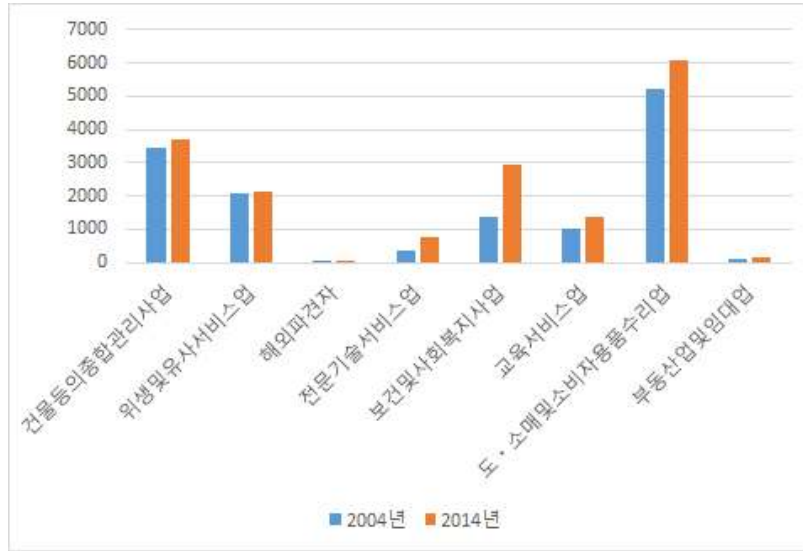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사망자 수를 제외한 재해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경제 내 비중이 커진 3차 산업이다. 전산업에서 3,010명이 순증가한데 반해 금융및보험업을 뺀 3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타의 사업’에서 순증가는 8,038명이었다. 그림 2는 ‘기타의 사업’ 내 중분류로 더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인 보건및사회복지사업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다. 산업재해의 감소 추세는 한국 사회가 노동하기에 더 안전해졌음에 대한 지표라기보다 경제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3차 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치명적인 재해(fatal injury)는 줄고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질병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²⁾

또 다른 물리적 강탈은 노동자의 시간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편이라는 사실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라는 위상을 오랜 기간 한국이 독차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보듯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약 300시간 길다.

2) 새사연 이슈진단(116)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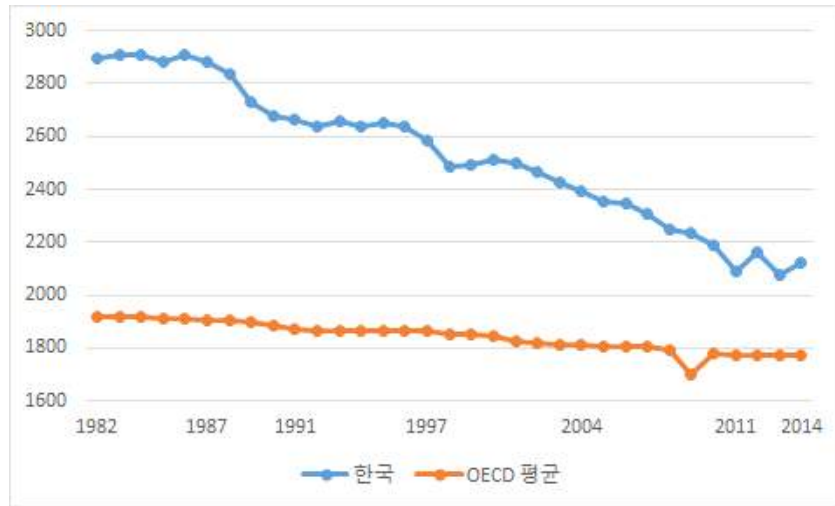


그림 2. 사망자 제외 재해자 수(명)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연도(국가통계포털kosis.kr 참조)

그림 3. 노동자 1인당 평균 연간 노동시간



출처: OECD.stat(stats.oecd.org 참조)

이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04년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게 되었고 주40시간제는 다수의 OECD 국가들의 노동시간 표준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 주에 40시간씩 일 년 간 꼬박 일을 한다면 연간 노동시간은 약 2,086시간이다. 한국의 2014년 연간 평균 노동시간 2,124시간보다 38시간 짧고 OECD 평균인 1770시간보다 316시간 긴 시간이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OECD 국가들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더 짧은 탓일까? 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OECD 평균 64%정도(한국은 약 80%)이므로 그렇게 간단히 말 할 수는 없는 듯하다. 물론 한국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이 기여



하는 측면이 있다.³⁾

그렇지만 노동시간의 단위 환산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한 주 40시간씩 1년 내내 일을 할 때의 2,086시간 보다 1주 정도 길고 OECD 평균은 8주 가까이 짧다. 산술적으로 한국에는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을 뿐더러 그들은 다른 OECD 국가의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휴일을 누리지 못한다.

표 1. 주요국의 연간 휴일 및 휴가 수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주휴일	104	104	104	104	104	104
공휴일	15	15	10	8	8	11
월차휴가						
연차휴가	15-25	8.5(04년)	13.1(97년)	25(01년)	31.2(96년)	25(92년)
계	134-144	127.5	127.1	137	143.2	140

출처: 김형민(2008)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중앙연구원, p.62에서 재인용

표 1의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휴일 및 휴가 수가 제도적으로 적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단, 한국의 주휴일을 104일로 계산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2004년 이후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도입한 제도는 ‘주40시간제’이지 ‘주5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40시간제는 주40시간을 5일간 나눠서 일을 하든지 6일에 걸쳐 나눠서 일을 하든지 노사 당사자의 재량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평일에 7시간씩 일을 하고 토요일에 5시간 일을 하는 것과 평일 5일간 8시간씩 일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에서 ‘동일하다’ 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을 1주일 1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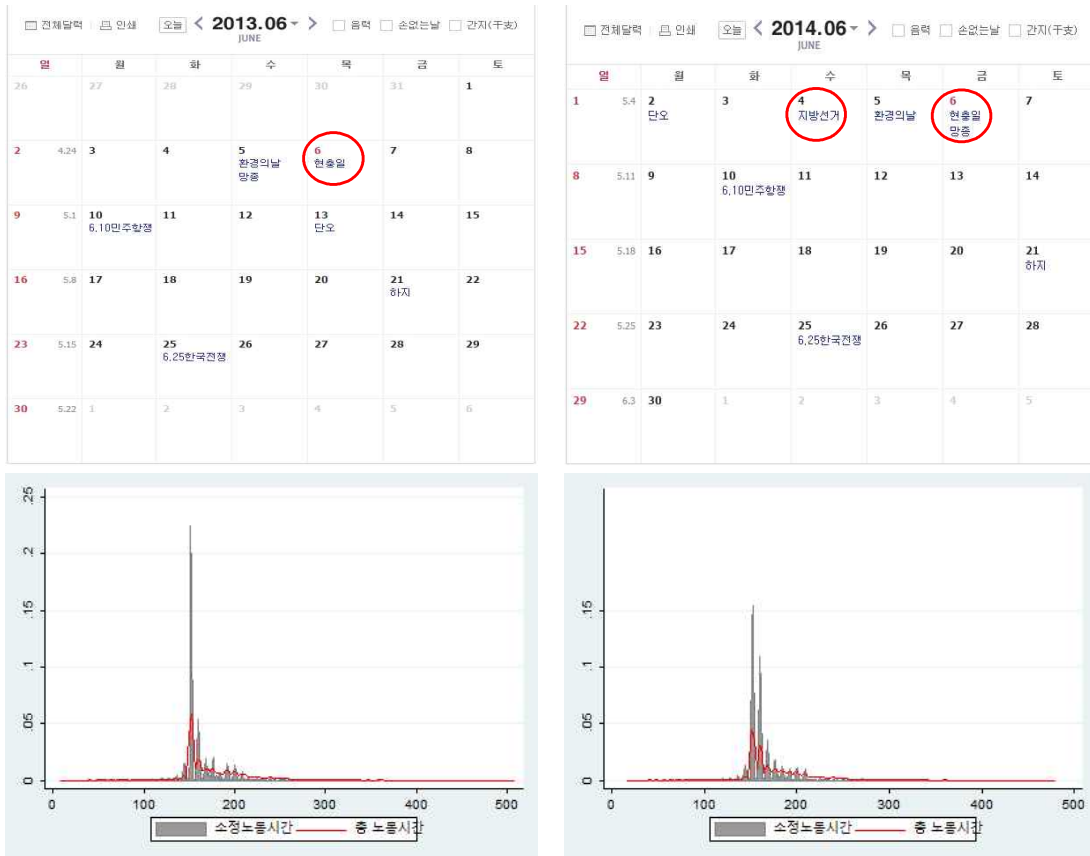
유급 주휴일은 말 그대로 주휴수당을 지불받는 ‘유급 휴일’ 이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급 휴일에 수행하는 노동은 상당한 페널티를 초래하게 된다. 주휴일의 노동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주휴수당 100%+1일치의 급여 100%+휴일수당 50%+초과수당 50%⁴⁾로, 유급 휴일 노동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100%만 지불하면 되지만 노동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300%를 지불해야 한다. 유급 주휴일은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1주일 최소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지도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주40시간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주5일제였다면 유급 휴일인 주휴일은

3) 전체 취업자 중 파트타임 고용률은 2014년 OECD 평균 16.7%, 한국은 10.5%(OECD.stat 참조).
4) 휴일수당과 초과수당의 중첩 계산 여부에 대한 최근의 하급심 판례와 고용노동부 입장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판례에 따라 소개하였다.



1주 1회가 아닌 1주 2회로 규정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는 사업체가 많으니 주휴일이 104일이라고 치자. 주말을 제외하고 연차휴가가 최소 15일이므로 한국의 노동자들도 30일, 6주 정도는 쉬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림 4. 2013, 2014년 6월 달력과 노동시간의 커널밀도함수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상용직 5+ 각 연도 원자료

그림 4의 왼쪽 열은 2013년 6월, 오른쪽 열은 2014년 6월의 달력과 노동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13년 6월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총 19일, 공휴일은 현충일 하루였다. 2014년 6월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19일이었으나 공휴일은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이틀이었다. 그 결과 노동시간 분포가 크게 달라졌다. 2013년에는 하루 여덟 시간씩 19일인 152시간을 소정노동시간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전체의 50.17%, 현충일을 쉬지 않고 160시간을 일한 노동자들은 11.48%였다. 2014년에는 공휴일 이틀을 모두 쉬는 노동자들이 36.75%, 하루만 쉬는 노동자 비중이 24.46%, 이틀 모두 쉬지 않고 8시간씩 21일을 일한 비중이 7.47%이었다.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을 모두 쉬는 사업체는 많아야 3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의 노동은 위법이 아니다. 한국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관공서가 아닌 사업체는 공휴일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공휴일의 휴무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휴일 휴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연차휴가가 최소 15일이므로 3주는 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⁵⁾에 마련되어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년째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에게 발생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함정은 제61조에 있다.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다면 그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이다.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사용자에게 휴가수당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사용자에게는 통보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휴가 사용 촉진 조항은 현실적으로 휴가 사용이 '그림의 떡'인 계약직 노동자들의 휴가수당마저 빼앗았다.

이제 우리는 표 1의 연간 휴일 수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주휴일 104일 중 52일은 유급 주휴일이 아니다. 공휴일 15일은 관공서에 다니는 노동자만 의무적으로 부여 받는다. 노동조합을 통한 취업규칙을 갖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발언권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은 남의 이야기일 수 있다. '조직 분위기를 해칠까봐 긴 휴가를 떠나지 못한다'는 노동자들의 사정은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다. '유급' 휴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무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우회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가?

주말을 제외하면 한국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휴일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역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국가들과 여전한 간극은 노동자들에게 주말을 제외하고 보장된 휴일이 없으므로 유지될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시간'에 대한 강탈은 제도적으로도 예비된 것이었다.

제 자식들을 삼키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는 결국 제 아들 제우스에 의해 유폐된다. 그의 아내 레아가 막내아들 대신 포대기에 싼 돌을 주어 삼키도록 기지를 발휘한 덕분이었다. 우리에게도 기지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이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비극적 패륜을 멈출 수 있게. 🇰🇷

5)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872>) 참조.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10월 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②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③	강세진
고용,노동	8/24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경제	8/3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최정은
주거	9/22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강세진
고용,노동	9/24	2015년 8월 노동시장 분석 : 20대 청년 니트(NEET)의 개념과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10/5	휴일무일	이정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